



LEGAL UPDATE

화우 보험 뉴스레터 2026-2호

Apr. 2026

기타 정책 동향

-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, 자기주식 보유·처분 공시제도 개선 입법예고(3.30.) -

❖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예고함

1. 주요 내용

- (공시 강화 및 대상 확대) 기존에 자기주식을 1% 이상 보유한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던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공시를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
 - 또한,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및 실제 이행내용을 연 2회 공시하도록 하여 상법상 제도와 상호 보완되게 함
 - 만약 공시서류에 허위 기재할 경우 과징금, 임원해임권고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
- (규제 정합성 제고) 개정 상법을 반영하여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기간 중 자기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, 신탁계약 종료 시 위탁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신설함
 -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 규정을 삭제하고,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장내 매도 방식을 제한함(처분상대방이 특정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은 유지)
 -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상법상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

(원문 링크)

<https://www.fss.or.kr/fss/bbs/B0000188/view.do?nttlId=216716&menuNo=2002188&d1Cd=&sdate=&edate=&searchCnd=1&searchWrd=%EC%9E%90%EA%B8%B0%EC%A3%BC%EC%8B%9D&pageIndex=1>